

第三十四回

定期代議員 總會報告

1966년 4월 19일·20일 양일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당에서 12지부 중 제주지부 불참으로 11지부 대의원 71명과 중앙대의원 16명 중 87명의 대의원과 일반회원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34회 총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 제 1일(4월 19일)

오전 10시 부회장 이귀양씨 사회로 막을 올린 총회는 국민의례가 있은 후 회장 홍신영씨의 개회사가 있었고 내빈축사로는 정보전사회부장관, 미 8군 간호과장 버그 중령의 축사가 있었다. 베리늘간호학교장 부렌단 마리에게 간호사업특별 공로자 표창이 주어졌고 “간호교육의 새 경향”이라는 주제로 Dr. Mildred P. Adams의 강연이 있었다.

오후 1시30분 회장 홍신영씨 사회로 속회된 이회는 고 이효정선생의 추모 묵념이 있은 후 대의원 전명과 회록 낭독이 있었다.

이어 각 지부장의 사업보고가 있었고, 협회 이사회보고와 각부 위원회 사업보고가 있은 후, 전순덕씨의 감사보고가 있었다. 정관개정안 심의가 있었으나 다음 날로 밀고 서울시지부 저녁 초대로 정회하였다.

◎ 제 2일(4월 20일)

오전 9시30분 회장 홍신영씨 사회로 속회되다. 정관(제6장 재정)수정안 통과가 있은후 다음과 같이 회비들 원안대로 인상하기로 결의하다.

혈 회 비 : 400원

지 회 비 : 200원

ICN 회 비 : 100원

입 회 비 : 100원

이어 1966년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이 통과되다.

의안 심의로 들어가 다음과 같이 결의되다.

◎ 결의사항

1. 간호원의 대우 개선 건

간호원에게 간호직 수당을 지급하

도록 관계 요트에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결의 함.

2. 학교 양호교사 대우 개선에 따르는 직제 제정 및 호봉문제(양호교사 대우문제)에 관하여 관계요로에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함.

3. 간호원해의진출의 건
본 협회 해의교환간호원 심의위원회의(특별위원회)에 일임하여 연구하기로 함.

4. 국내 간호원 수급문제 해결책으로 다음사항을 행정부에 건의하기로 함.

1) 기혼자 채용

2) 시간제 근무 제도 실시

3) 공무원 규정에 의한 근무 연한 연장.

4) 시설 좋은 간호학교에 학생 증원 및 기존간호학교 시설증설

5) 지방 간호원 수당 지급(벽촌 및 보건간호원에게 특별수당 지급하도록)

5. 양회 통합문제(본 협회와 조산협회의 통합문제)

양회의 통합을 원한다는 총회의 의사를 보사부와 조산협회에 알리기로 함.

6. 지방 간호학교 교사 및 실습교류.

하기방학을 이용하여 지방 간호학교와 학생들의 실습을 교류하기로 하고 이 문제를 교육위원회에 일임하여 연구하기로 함.

7. 국내 간호원 교환제도 실시.

시설이 좋은 병원과 시설이 부족한 지방 병원에 간호원들의 교환 제도실시를 이사회에 일임하여 연구하기로 함.

8. 기성위원회와 기성회비에 관한 건.

기성위원회를 존속하고 신 회원들에게는 계속 기성회비를 받기로 함.(기성회비는 400원)

9. 간호보조원 제도 문제

이 문제를 교육위원회에 일임하여 연구하기로 함.

10. 보건간호원 문제.

현 간호원제도에서 보건간호원 제도를 부활시켜 보건간호원 자격증 제도로 하는 방향으로 결의하고 이 문제를 연구한 후 관계 부처와 교섭하기로 함.

11. 본 협회 총회 후 지부총회 개최 여부.

이 문제에 대하여는 각 지부에 일임하기로 함.

오후 1시30분 부회장 이귀향씨 사회로 속회되어 임원선거에 들어가 전형위원이 추천한 34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 다음 분단이 이사로 피선되었다.

권석혜, 김복음, 김아덕, 박소홍, 소숙경, 안홍선, 유성순, 유순한, 이경식, 이귀향, 이영복, 이표희, 이해정, 최정자, 홍신영, 홍옥순, 황영희.(가나다 순)

정회하고, 세브란스병원장의 저녁

초대가 있었다. 식사 후 부회장 이귀
향씨 사회로 속회하여 다음과 같이
회장단과 감사가 선출되다.

회 장 : 홍신영

제 1부회장 : 이귀향

제 2부회장 : 소속정

감 사 : 장복순, 전순덕.

고문선생님들은 유임키로 결의하여
김활란 박사, 손금성 선생, 이태영
선생으로 하다.

1967년 총회 개최장소는 강원지부

에서 초청하다.

신임 회장의 취임사가 있을 후 신
구 임원의 교체인사가 있었고, 경북
지부장 김정선씨의 총회를 위하여 성
원해 주신 각 기관과 수고해주신 여
터분들에게 치하의 말씀이 있었다.

폐회하니 오후 10시 20분이었다.

총회를 끝마친 후 4월 21일은 각자
회망에 따라 경기도 부평 121병원을
결학했다.

1965년도 경상비 수지결산서

수 입 부

자. 1965. 5. 1.
지. 1966. 3. 30.

관	수	입	액	비	고
항	목				
회	비		2,056,450		
간	호	지	306,720		
감	수	입	348,307	은행이자, 간호학문제집대, 주 천서대, 기타	
대	여	금	82,000	문교부와학교육과 간호교육 심 의위원회에 대여하였던 것.	
전	년	도	302,704		
총	계		3,096,181		

지 출 부

관	항	목	지	출	액	비	고
사	무	비					

	인 건 비		630,800	직원 7명분 및 임시직원 급료
		급 료 잡 급	606,600 24,200	
	여 비		23,902	지방이사 및 이사출장여비 등
	비 품 비		15,541	
	수 요 비		116,532	
		소 모 품 비 교 등 비 통 신 비 인 쇄 비 도 서 비 잡 비	30,876 24,226 47,896 3,500 3,610 6,424	전화요금 포함 신문대 포함
유 지 비			39,322	
		연 료 비 전기수도료 야경청소비 수리및 기타	15,150 8,241 1,120 14,811	
회 의 비			44,020	
	이사회비		20,260	
	위원회비		23,760	
관 공 비			64,372	
사 업 비			1,131,124	
		교 육 비	114,359	

	지부보조비	396,000
	간호저제작비	376,834
	공보활동비	112,936
	경 조 비	21,050
	기타 사업비	109,945
경 노 회 비		34,150
ICN. 대포 파견기금		20,000
퇴직 적립 금		50,000
대 여 금		82,000
잔 액		844,418
총 계		3,096,181

1965년도 출판부 수지결산서

수입부

자 1965, 5, 1
지 1966, 4, 15

항 목	수 입 액	비 고
간 호 지 대	178,030	
해 생 4 판	205,160	
기 준 간 호 학	260,150	
내 파 간 호 학	301,440	
광 고 르	80,000	
출 판 보 조 금	20,000	
해 생 5 판	244,850	
육 아 와 간 호	52,230	
잡 수 간 호	18,947	
전 년 도 이 월	333,779	
총 계	1,640,586	

지출부

항 목	지 출 액	비 고
간 호 지 제 산 비	91,660	
내 파 간 호 학	504,334	
인 건 비	7,000	
해 생 5 관 제 작 비	661,750	
출 관 협 회 비	2,650	
회 의 비	3,080	
운 송 통 비	15,805	
교 모 품 비	1,162	
소 모 품 비	2,895	
잡 비	12,362	
잔 액	337,888	
총 계	1,640,586	

기 본 금 보 고 서

수입부

자 1965, 5, 1
지 1966, 3, 30

항 목	금 액	비 고
임 회 비	88,600	
은 행 이 자	5,501	
이 월 금	31,100	전년도 입회비
합 계	125,201	

기 성 회 비 보 고 서

수입부

자 1965, 5, 1
지 1966, 3, 31

항 목	금 액	비 고
기 성 회 비	355,680	
전 세 금	100,000	서울시지부 사무실 전세금

전 년 도 이 월 금	183,265
은 행 이 자	20,753
총 계	659,698

지 출 부

항 목	금 액	비 고
공 사 비	100,040	본 회관 수리공사비 출판부에 대여
대 여 금	50,000	
잔 액	509,658	
총 계	659,698	

장 학 금 보 고 서

수 입 부

자 1965, 5, 1
지 1966, 3, 30

항 목	금 액	비 고
반 환 금	46,300	
은 행 이 자	209	
이 월 금	433	
총 계	46,942	

지 출 부

항 목	금 액	비 고
대 여 장 학 금	46,900	
잔 액	42	

I. C. N. 대표 파견기금 수지결산서

수입부

자 1965, 5, 1
지 1966, 3, 30

항 목	금 액	비 고
경 상 비 예 서	20,000	
전 년 도 이 월 금	41,585	
총 계	61,585	

항 목	금 액	비 고
I.C.N. 총회 참석 보조	40,000	회장 I.C.N. 총회 참석 여비 보조
잔 액	21,585	
총 계	61,585	

퇴직금, 적립금 보고서

수입부

자 1965, 5, 1
지 1966, 3, 30

항 목	금 액	비 고
경 상 비	50,000	
총 계	50,000	

항 목	금 액	비 고
퇴 직 금	11,830	직원 2명 퇴직금
잔 액	38,170	
총 계	50,000	

대한간호협회 1965년 3월말현재 일반 재산내역

1) 동 산 부

적 요	금 액	비 고
경 산 비 잔 액	844,418	은행예금 843,555 현금 863
장 학금 지 급 잔 액	42	
기 성 회 비 잔 액	509,658	
I.C.N.대 표 자 파 견 금 적 적	21,585	
경 노 회 비 적 립 금	34,150	
퇴 직 금 잔 액	38,170	
간 호 지 미 수 금	55,880	
기 본 금 잔 액	125,201	
총 계	1,629,104	

2) 부 동 산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88-7

매지, 79명 4홉 동지상 연와급 목조 2층 건물 본가 일동

가격, 3,200,000 원

대한간호협회 1966년 4월 15일현재 출판부 재산내역

적 요	금 액	비 고
1. 금 액		
출판부 기금 잔액	337,888	은행예금 336,740 현금 1,148
2. 서 적		
해 생 4 판		재고부수 13부 $490 \times 13 = 6,370$
		미 수 금 17부 $490 \times 17 = 8,330$
해 생 5 판		재고부수 1,405부 $590 \times 1,405 = 828,950$
		미 수 금 202 " $590 \times 202 = 119,180$
육 아 와 간 호		재고부수 1591 " $150 \times 1,591 = 238,650$

기 초 간 호 학	미 수 금 88부	150×88	=13,200
	재고부수 152 "	350×152	=53,200
	미 수 늘 290 "	350×290	=101,500
내 과 간 호 학	재고부수 867 "	490×867	=424,830
	미 수 금 479 "	490×479	=234,710
총 계			2,028,920

각 지 부 회 비 납 부 상 황

자 1965, 5, 1
지 1966, 3, 30

지 부 명	전액 회원수	감액 회원수	1964년도 회비납부자수	금 액 비 고
서울시지부	2,272	50	351	858,860
군진 "	666	—	1	226,680
부산시지부	441	51	31	162,990
경남 "	182	33	2	65,830
경북 "	512	—	100	196,160
전남 "	387	—	82	151,260
전북 "	319	—	—	108,460
충남 "	235	67	20	89,030
충북 "	115	2	11	41,640
경기 "	210	25	14	76,870
강원 "	200	1	27	74,590
제주 "	12	—	—	4,080
합 계	5,551	229	639	2,056,450

각 지부 기성회비납부상황

자 1965, 5, 1
지 1966, 3, 30

지 부 명	인 원	금 액	비 고
서 울	230명	91,200	
군 진	7	2,800	
부 산	15	3,000	
경 남	43	10,000	
경 북	180	71,600	
전 남	148	43,000	
전 북	53	21,200	
충 남	214	77,640	
충 북	10	2,600	
경 기	85	24,240	
강 원	21	8,400	
제 주	—	—	
합 계	1,006	355,680	

(21P.에서)

9. 간호원은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실제로 계약된 봉급단을 받는다.
10. 간호원은 그의 이름이 상품광고에 관련하여 사용되거나 또는 다른 어떠한 광고형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가치 않는다.
11. 간호원은 다른방면에 직원들과의 사이에 협력과 조화된 관계를 유지한다.
12. 간호원은 사생활에 있어서도 그의 전문업의 명예에 비추어 개인도덕의 표준을 고수한다.
13. 간호원은 개인행동에 있어서도 그들이 생활하고 또 일하고 있는 사회풍습을 고의적으로 멸시해서는 안된다.
14. 간호원은 시민들 그리고 다른 보전사업가들 즉 한지방, 국가 또는 국제적인 공중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람들과 협력하고 책무를 같이 하여야 한다.